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1) 입소정원은 수급자 25명으로 한다.
- 2) 이용대상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의한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1~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입소가 가능하다. (단,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입소가 가능하다.)

2.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은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장기요양보험공단)와 관계기관 연계, 이용자, 보호자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관계기관; 협력 병원등)

3. 입소절차 및 입소서류

- 1) 입소 절차
 - ① 입소상담 ② 입소심의 ③ 입소통보 ④ 입소 ※긴급사항일 경우 입소절차가 변경 될 수 있다.
- 2) 입소서류
 -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③ 건강검진(입소시설용) : 전염병 유무 확인
 - ④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⑤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해당)

● 입소계약

1. 계약목적

-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체결 한다.
-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한다. (전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2.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시설급여의 비용과 비급여비용)

-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의 대표가 정한다.
- 2)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3)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4)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5)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 1일/50,000원/비급여비용 별도로 한다.
(단, 보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부담 비용을 협의하여 입소가 가능하다.)
- 6)기타 비용부담액 ; 본인 약제비, 촉탁비용, 이미용비, 개인물품

1. 시설급여 비용	2. 비급여비용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 (실비)	1)식재료비 : 1식 4,000원 / 간식1,000원(1회/일)
2) 감면대상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 본인부담금 8% + 비급여	2)상급침실료(1일): 3,000원(2인실) / 5.000원(1인실)
3) 일 반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수가 30일 기준 입소비용】

31일, 30일, 28일 등 시설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비용도 변동된다.

구 분		2025년도 수가 비용 (30일 기준)		
		1등급(90,450)	2등급(83,910)	3등급79,240)
본인부담		542,700	503,460	475,440
비급여	식재료비	390,000원 (1식 4,000원 / 간식 1회 1,000원)		
합 계		932,700원	893,460원	865,440원
상급침실료		2인실 (1일 3,000원) / 1인실 (1일 5,000원)		

4.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등)
 - ⑥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 ⑦ 장기간의 부재, 10일을 초과하는 장기 입원 및 외박이 있을 경우
 -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변경

갑, 을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7. 비용의 수납과 변경 방법 및 절차

- 1)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매년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입소자(어르신)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2)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④ 비급여비용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변경 시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을 작성한다.
- 3)본인부담금 납부
 -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2)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9. 퇴소 및 이용료의 반환

- 1) 퇴소는 장기요양기관 입소계약서의 「계약의 해지 및 종료」에 준한다.
- 2)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계좌 입금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 1) 급여제공 서비스 ;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 ①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②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 ④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 ⑤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⑥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신체,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⑧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

-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보호자에게 알리고, 연락이 안될 경우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 ④ 시설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입소자(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① 입소자(어르신) 또는 종사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어르신)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은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 4)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3.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자(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 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4.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 ① 병원 진료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②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③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 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지 처리절차
 - ① 가벼운 질병은(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②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요양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1)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3)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2.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요양원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어르신)가 임의로 외출.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입소자(어르신)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입소자(어르신)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임종, 장례

1. 입소자의 임종 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입소자의 임종은 병원에서 하도록 한다.
 - 시설내에서 임종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 2) 가족이 있을 경우 연락을 하여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 3) 무연고 입소자의 경우 치료 및 입원은 시설장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장례를 모신다.
 - 2) 무연고 입소자의 경우 임종 후 협력 장례식장으로 모신다.
 - 3) 장례는 2일장(24시간)과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 4) 장례를 모신 후 담당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사망신고를 한다.
3. 장례 후 입소자의 유류금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 1) 당해 입소자의 의료보험에 의료경비 부담
 -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 3) 기타 당해 입소자와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 충당

● 입소자(어르신)의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제132조 (입소자의 권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소자(어르신)의 인권보호, 학대예방, 안전관리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2006년 5월 보건복지부)에 준한다.

1. 시설 생활 입소자의 인권보호
 - ① 시설 생활 입소자의 권리선언
 - ② 시설 생활 입소자권리보호 및 윤리강령
2. 시설 생활 입소자 학대예방 및 개입
 - ① 노인 학대 유형
 - ②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③ 시설 생활 입소자 학대예방
 - ④ 시설 생활 입소자 학대사례 개입
3. 시설 생활 입소자 안전관리
 - ① 생활입소자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 ② 응급환자 발생,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 ③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 ④ 화재예방 및 발생 시 입소자대피 등 조치사항
- 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은 위생관리